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차별 뉴욕주 인권법에 해당

뉴욕주 인권법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장애와 코로나19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이에 인식된 연관성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뉴욕주 인권 부서(Division of Human Rights)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HRL)은 인종, 출신 국가, 장애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을 차별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인권법은 이러한 특성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고용, 주택, 교육 및 공공 시설의 장소를 포함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차별에 대해 우려하는 뉴욕 주민들께:

- 호텔, 식당, 교통 서비스, 소매점과 같은 공공장소는 출신 국가, 인종 또는 장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귀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입장 또는 접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귀하의 인종, 출신 국가, 장애만을 근거로 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집으로 보내거나, 직장에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장애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 관행입니다.

- 고용주가 차별적 정책에 따라 귀하를 해고하거나 집으로 보내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이로 인해 발생한 귀하의 지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 예방 조치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여전히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법은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장애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가능성 사이의 인식된 연관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얼굴 마스크를 착용해도 이러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누군가가 귀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귀하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경우 911번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해 사건을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인종, 출신 국가에 근거한 위협과 괴롭힘은 증오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888-392-3644번으로 전화하여 뉴욕주 증오 범죄 태스크 포스(New York State Hate Crimes Task Force)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인권법 관련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NYS 인권 부서 웹사이트(WWW.DHR.NY.GOV)를 방문하거나 1-888-392-364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핫라인(1-888-364-3065)을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GOV/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GOV/CORONAVIRUS)에서 확인하거나 1-888-364-3065번으로 문의하십시오.